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1호, 2019. 11. 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 및 계약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을 정함(안 제7조 제1항 신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 대상을 지정(안 제7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9. ~ 3.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①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부 칙

이 영은 2020년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①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u> <u>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u> <u>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u> <u>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u> <u>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u> <u>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u>

<u>제7조</u> (생 략)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u> 1. 「<u>건설산업기본법</u>」 제34조 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u>제7조의2</u> (현행 제7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215